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512

발의연월일: 2025. 4. 1.

발 의 자: 강대식 • 박준태 • 강선영

백종헌 • 고동진 • 김상욱

이인선 • 조지연 • 임종득

주호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후보자등록 시 병역사항, 등록대 상재산,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, 범죄경력, 최종학력 등의 증명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,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 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음.

한편, 후보자등록 이전 단계인 예비후보자등록에는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, 범죄경력, 학력에 대한 증명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, 병역 사항도 범죄경력 등과 같이 유권자가 예비후보자를 사전에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음.

이에, 예비후보자등록 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,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 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가 한층 더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(안 제60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의2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전단 중 "제2항에 따른 기탁금과"를 "제2항에 따른 기탁금 및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와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제1호의2 중 "제2항제2호에 따른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"를 "제2항제1호의2에 따른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"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"제2항제2호 및 제3호와"를 "제2항제1호의2·제2호·제3호와"로 한다.

1의2. 제49조제4항제3호에 따른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예비후보자 등록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0조의2(예비후보자등록) ①	제60조의2(예비후보자등록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	②
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	
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	
제56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	
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	
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	
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	
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	
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	<u>.</u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의2. 제49조제4항제3호에 따른
	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
2. · 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	③
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	
를 수리하되, 제2항에 따른 기	<u>제2항에 따른 기</u>
<u>탁금과</u>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	탁금 및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
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	<u>서와</u>
청은 수리할 수 없다. 이 경우	
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	
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	

를 수리하되, 피선거권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, 그 조회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회보하여야 한다.

- ④ 예비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예비후 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.
- 1. (생략)
- 1의2.
 제2항제2호에 따른 전과

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

 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
- 2. ~ 4. (생 략)
- ⑤ ~ ⑨ (생 략)
-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제8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이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(제

4
1. (현행과 같음)
1의2. <u>제2항제1호의2에 따른 병</u>
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및 같
은 항 제2호에 따른 전과기록
에 관한 증명서류
2. ~ 4. (현행과 같음)
⑤ ~ ⑨ (현행과 같음)
①
<u>제2항제1호의2·제2호·제3</u>
호와

49조제12항에 따라 공개하는	
경우는 제외한다).	
① (생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